

제 1084 호
1985. 5. 6.

발행인 : 서울특별시청 영문보
편집인 : 공보관 조남호
전화 : 731-6111-3
인쇄 : 서울특별시 통합활판실
전화 : 735-3337

시보

차 례

◎ 고 시

제 296 호 : 서소문구역 제 7 지구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3
 제 297 호 : 주택개발재개발사업 분양처분 3
 제 298 호 :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 4
 제 299 호 :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 4
 제 300 호 : 도시계획사업 (주차장) 시행인가 5

◎ 공 고

제 276 호 : 구로지구완지계획일부변경 및 완지에정지변경지정공고 5
 제 277 호 : 전기공사업체 (제 2 종) 실패공고 6

< 이 면 계 속 >

공 합										

1.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.
2.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.

서울특별시

제 278 호 : 도시계획안공고	6
제 279 호 : 공원시설설치허가공고	7

◎ 사 령
(출석통지서)

고 시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6 호

서소문구역 제7 지구지개발사업시행변경인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6 호 (82.1.28) 로 사업시행인가된 서소문구역 제 7 지구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재개발법 제 12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58 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재개발사업 시행변경인가 (시행기간연장) 하고 동법 제 16 조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고시한다.

1985. 5. 4

서울특별시장

가. 변경인가 내용

○ 시행기간

기정 : 82.1.28 - 85.4.30

변경 : 82.1.28 - 85.5.31

나. 변경사유 : 관리처분 계획변경 (최종확정)

다. 기타사항 : 변경전 인가내용과 동일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7 호

주택개량재개발사업분양처분

- 1. 주택개량을 위한 재개발사업구역인 돈암3 구역 (일부) 의 재개발사업이 완료되었기 도시재개발법 제 48 조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처분 하고 이를 고시한다.
- 2. 분양처분된 내용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개별 통지할 것이나, 송달되지 않을 때에는 본 고시문으로 갈음하고 동 분양처분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건설관리국 주택개량과 및 성북구청 시민봉사실 (도시정비과 지적계) 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5. 6.

서울특별시장

다 음

구역명	필수	위	치	면적 (㎡)	비고
돈암3구역	32	성북구	돈암동 8일대	20,111.3	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8 호
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
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258 호 (85. 4. 16) 로 도시계획시설 (도로) 변경결정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
 가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승인조서

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 하였기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1985. 5. 6.
 서울특별시장

구분	등급	류별	번호	폭 (m)	연장 (m)	시 점	종 점	비 고
기정	중로	1	184	20	2,600	상도동 204-150	봉천동, 남부순환도로	현황도로 이용 폭
변경	"	1	184	20	2,850	상도동, 장승배이광장	"	원확장 및 노선연장 (L = 250)

나. 도시계획시설 (도로) 지적 승인도면 : 별첨도면 표시와 같음 (도면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299 호
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지적승인
 1. 서울특별시 고시제 684 호 (83. 12. 21) 로 결정 고시된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3 조 및 동법 시행령 제 6 조 권한 위임규정에 따라 이를 고시한다.
 2. 관계도서는 동작구청 도시정비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 1985. 5. 6
 서울특별시장

가. 도시계획시설 (학교) 조서

구 분	시설명	위 치	규 모 (㎡)	비 고
변 경	학교	흑석동 2-9 일대	11418(㎡) - 11229 ㎡ 감 189 ㎡	일부해제 및 추가

나. 도면 : 별첨 (생략)

◎ 서울특별시고시제 300 호

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시행인가

- 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311 호 (84. 5.25) 및 동고시 제 63 호 (85.2. 1)에 의하여 도시계획시설(주차장)결정 및 지적승인된 성북구 돈암동 865 번지 일대(정능천)에 대하여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을 시행하고자 도시계획법 제 25 조 및 동법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시행 인가하고 고시한다.
- 2. 관계도서는 성북구청 토목과 및 건설관리과에 비치하고 토지 및 건물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

1985. 5. 6

서울특별시

가. 사업시행자: 성북구 하월곡동 104 의 152-104 의 155

나. 사업의 종류: 도시계획사업(주차장)시행

명칭: 정능천(서라벌교교앞)복개공사

다. 사업의 규모: 암거복개

B=11.3m-13.9m, L=90.8m

라. 사업 시행자: 서울특별시

마. 사업의 착공 및 준공예정일

착공: 1985. 5. 15

준공: 1985.12.15

바.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: 별첨

사. 토지 또는 건물 소유자와 토지

수용법 제 4 조 3 항의 규정에 의한

이해관계인 주소, 성명: 별첨



◎ 서울특별시공고제 276 호

구로지구환지계획일부변경및환지에
정지 변경 지정공고

- 1. 건설부공고 제 37 호 (79.3.29)로 사업시행인가된 구로토지 구획정리사업지구내 환지에정지중 일부 토지에 대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 55 조 및 제 56 조 규정에 의하여 환지계획 일부변경 및 환지에정지 변경 지정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

1985. 5. 6

서울특별시

- 환지계획변경내용 -

가. 사업명: 구로토지구획정리사업

나. 변경위치: 서울특별시 구로구 구

<p>로동 및 영등포구 대림동, 도림동 신길동 각일부</p> <p>다. 기타: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 시계획국 구획정리과와 관할구청 도 시정비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 이고 있으며 토지소유자에게는 개 별 통지할 것이나 미수령되는 토 지소유자 및 이래 관계인에게는 이 공고로 갈음한다. (관계도서생략)</p>	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7 호</p> <p>전기공사업체 (제 2 종) 실태 공고</p> <p>전기공사업법 제 33 조 1 항 및 동 법 시행규칙에 의거 전기공사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 42 조 규정에 의거 공고함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5. 6 서울특별시 장</p>
---	--

면허 번호	상 호	소재지	대 표 자	위 반 내 용	행정처분내용
630	태광전력	삼전 133	이 규 병	'84 실적미보고	영업정지 (85.5.8 85.6.7) 1개월
1055	아성기업사	성내 441	엄 관 용	"	"
1057	아진종합전기	암사 414-2	송 금 섭	"	"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8 호</p> <p>도 시 계 획 안 공 고</p> <p>1. 서울특별시 고시 제 193 호 (74. 12.24) 로 도시계획시설 (운동장) 결정된 도봉구 우이동 103-1 번지 외 3 필지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 16 조 2 및 동법 시행령 제 14 조 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도시 계획안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 14 일간 일반인에게 보인다.</p>	<p>2. 본 도시계획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때는 공람기간내에 공람장소 로 서면으로 제출하기 바람.</p> <p>가. 공람기간 : 85 년 5 월 7 일 - 85 년 5 월 21 일</p> <p>나. 공람장소 : 서울특별시 도봉구청 도시정비과</p> <p>다. 개 요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5. 6 서울특별시 장</p>
--	---

• 도시계획시설(학교) 변경결정 (단위:㎡)						
시설명	위 치	기 정	변 경 내 용		변경 후면적	비 고
			폐 지	추가결정		
운동장	우이동 103-1 외 3 필지	7,114	7,114		0	폐 지
학 교	우이동 103-1 번지일대	31,975		7,114	39,089	

<p>◎서울특별시공고제 279 호 공원시설설치허가공고</p> <p>1. 건설부 고시 제 369 호 (82.12.30) 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및 지적 승인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 698 호(83.12.26) 로 조성계획이 결정 및 지적승인된 관악산 도시자연공원중 독산시설구역에 대하여 도시공원법 제 6 조와 동법시행령 제 2 조 및 도시계획법 제 24 조와 동법 시행령 제 6 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같이 공원시설설치특시행허가 하였기 이를 공고한다.</p> <p>2. 관계 도서는 구로구청 공원녹지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인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">1985. 5. 6 서울특별시장</p>	<p>가. 사업 시행지: 구로구 독산동산 204-1,4,5,6,7</p> <p>나. 사업의 종류 및 명칭: 도시계획사업(공원시설설치) 독산시설구역 공원시설설치공사</p> <p>다. 사업시행 규모</p> <p>1) 시행면적: 3,244㎡</p> <p>2) 시행내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운동시설: 2,584㎡ (테니스장 5편) ○ 관리시설: 63㎡ (관리사무실 1동) ○ 조경기타: 597㎡ <p>라. 사업의 시행자: 서울특별시 은평구 녹번동 75-32 문시태</p> <p>마. 사업착수 및 준공예정일</p> <p>1) 착공: 허가일로부터 14일 이내</p> <p>2) 준공: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</p> <p>바. 사용할 토지 및 토지소유자: 생략</p> <p>사. 위치도 및 평면도: 생략</p>
--	--

사 령

◎ 1985 년 5 월 6 일자

명제 150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송수성	내무국 근무를 명함. 대통령비서실 파견 근무를 명함. (85.5.6 - 별도 통보 시까지)	종로구 시민국장	지방서기관

◎ 1985 년 5 월 7 일자

명제 151 호

성 명	발 명 사 항	현 부 서	직 급
권영섭 이정휴	비상계획과 동작구	성동구 용산구	지방건축기사보

--	--	--	--

